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21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9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, C, D, E는 각 9/4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F, G, H은 각 2/4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I는 3/4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. 11. 5.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장성진

별지